

衛星直接放送에 대한 國際的 規制에 관한 研究

洪 晟 弼*

<目 次>

I. 序 論	報의 自由*
II. 衛星直接放送의 意義와 影響	V. 衛星直接放送의 內容規制
III. 衛星直接放送에 대한 國際的 規範 形成過程	VI. 衛星直接放送에 관한 國家 責任
IV. 衛星直接放送에 있어서 '情'	VII. 結 語

I. 序 論

情報化社會의 도래로 인하여 人間의 삶의 형태는 革命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전기통신구조는 종래에 國境을 中心으로 個別國家의 主權의 統制를 통하여 유지되어 오던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주권행사능력을 침해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는 法制度 내지 결맞는 규범의 형성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현상이 위성직접방송(Direct Broadcasting by Satellite: DBS)의 실사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도 위성직접방송과 越境電波(Spill Over)의 문제는 하나의 可能性에 불과하였고 國際的 規範形成 段階도 論議의 必要性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 직접위성방송의 문제는 南北關係라는 국제적 세력구조 속에서 焦眉의 문제로 등장하였고 受信國과 DBS 실시국 사이의 利害關係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발전의 장려와 분배를 이루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후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制度的 側面의 成果를 거두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이제부터는 ① 法律的側面에서 DBS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고, ② DBS의 국제적인 규제의 노력과, ③ DBS에 관하여 주장되어지는 ‘情報自由의絕對性’, ‘內容規制의妥當性’, ‘事前同意’(prior consent)과 ‘事前協議’(prior consultation)의義務性을 검토하고, ④ 結論적으로 DBS에 관한 ‘國家責任’(state responsibility)과合理的인對應方案을 모색하는 것으로研究를進行할 것이다.

II. 衛星直接放送의 意義와 影響

通信 또는 放送衛星(Communication or Broadcasting Satellite)은 지구 적도상공 35,800km에 위치하고 있는 地球停止軌道(geostationary, synchronous orbit) 위를 走行하는 위성으로, 하나의 위성으로 지구표면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廣域性을 특징으로 한다.⁽¹⁾

위성의 종류는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첫째 유형은 點對點(point-to-point)衛星이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특정한 지구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signal)를 다시 다른 지구국(earth ground station)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둘째 유형은 配布衛星(Distribution Satellite)을 들 수 있다.⁽²⁾ 이것은 지구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를 마을회관, 학교와 같은 地域受信者(Community Receiver)가 다시 cable system 등을 통하여 個別受信者에게 배포하는 방송형태를 가지고 있는 위성을 말한다.⁽³⁾ 세째는 直接衛星放送이다. 이것은 가장 발달된

(1) UNESCO, *A Guide to Satellite Communication, Reports and Papers on Mass Communication*, N.66, pp.10-11 (이하 UNESCO N.66).

(2) Taishoff, Marita Natasha,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Direct Broadcast Satellite*, Frances Pinter, 1987, p.4, UNESCO, Id.는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나, Hurwitz, B.A., “The Labyrinth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Law: Direct Broadcast Satellites”, NILR, 1988, pp.14-146은 ① from a satellite to a community receiver style, ② point-to-point broadcasting, ③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로 분류하기도 한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실제에 있어서는 point-to-point 위성서비스나 DBS 위성서비스나 개별수신자가 시청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 따라 특히 Distribution Satellite과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는 그 구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F.W. Hondius, “European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s for Television and Sound Radio”,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10, 1985, p.369.

형태로서 강력한 송출력을 가진 위성을 통하여 개별수신자에게 직접 전파수신이 가능하도록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한때에 방송위성기술 발전이 비교적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던 日本은 아이러니칼하게도 1984年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한 직접위성방송 사용 개시국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일본 NHK방송의 시청권이 되어버렸다.⁽⁴⁾ 이러한 spill-over 효과 발생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이를 ‘文化侵略’으로 규정하고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 없이 방송을 실시한 점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⁵⁾ 다만 당시에는 국내에서의 日本 TV방송 시청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였고 日本側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별다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제 접시형 안테나, 주파수변환기(converter), 채널선택용 튜너 등의 수입 및 생산이 현실화되고 가격도 저렴하여지는 등 DBS 수신이 可視化되고 한편 日本도 내년 8월을 전후하여 노후된⁽⁶⁾ BS2a 위성에 대신하여 BS-3를 발사하고 일부 채널을 民間放送인 후지 TV에 할당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日本 TV의 국내침투(spill-over)는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⁷⁾

DBS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측면에

(4) 放送視聽可能地域圖



資料：李桓義, 『뉴미디어叢論』, 교보문고, 1985, p.176,

(5) Taishoff, supra n.2, p.88.

(6) 일반적으로 위성의 수명은 7~10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7) 1989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측면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상업적 선전을 통하여 소비구조 내지 소비욕구가 변화하여 체제내적 갈등을 창출하게 되면 상업적 측면의 문제가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의 문제란 바로 소위 ‘정치적 선전(political propaganda)’을 의미한다. 1936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체제 하에서 성립된 ‘平和의 大義를 위한 放送利用에 관한 國際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Use of Broadcasting in the Cause of Peace)은 정치적 선전에 관하여 국제적 규제를 가할 것을 明示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 이에 관한 규제는 어려우며 DBS의 ‘內容規制(content control)’ 문제의 중요한一部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적 측면에 있어서의 영향은 상업광고(advertisement)와 소비충동적 방송으로 직접적인 상품선전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여 경제질서의 이질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國內法을 통하여 상업광고와 상업적 내용을 포함한 방송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DBS 시스템을 통하여 外國商品에 관한 선전과 소비충동적 방송이 아무런 여과없이 국내 TV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BS 실시국과 수신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있어서도 이에 관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DBS실시로 인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文化從屬과 文化帝國主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제3세계 국가들은 先進國들의 放送體制 獨占으로 인해 自國의 政治的, 文化的 位置가 구조적으로 종속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世界情報通信構造의 再建設이 不可避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先進國群에서도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국가

(8) 이러한 흐름은 신국제경제질서 (NIEO)의 한 측면으로 신국제정보통신질서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NWICO)의 확립을 촉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Communicate權 논의로 내용이 심화되어지고 있다. Fitzmaurice, William, “The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Is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

들 역시 文化從屬 특히 美國化(Americanization)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⁹⁾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선언 등을 통하여 個別民族·國家의 고유한 文化發展을 장려할 것을 환기하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규제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兩者協商(bilateral negotiation)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유의하면서 協力과 相互合意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I. 衛星直接放送에 대한 國際的規範 形成過程

DBS기술은 최신기술의 하나로서 이에 관한 법적 규제는, 초국경환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이나 원자력에너지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와 같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전통적인 원칙의 類推適用과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原則의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DBS현상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 정보자유에 관한 人權(Free Flow of Information Principle)과 경보통신 규제에 관한 국가주권 사이의 대립, 고도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國家責任(state responsibility), 宇宙法(space law), 국제통신법(주파수의 국제적 분배, 주파수 사용에 관한 국제적 고지와 등록, 유해한 전파방해의 금지) — 동시에 국내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DBS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UN과 UN산하의 COPUOS(外界平和利用委員會,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국제기구들에서의 논의의 중심적인 내용은 ① DBS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는가(內容規制), ② DBS를 실시하기 전

cation the Answer?", *Jr. of Intl. Law and Politics*, v. 15, 1983, pp. 953-957; Raman, K. Vewkata, "Towards a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Problems of Access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Structure & Process of Intl. Law* (ed. by Macdonald & Johnston, Martinus Nijhoff, 1983), pp. 1027-1061.

(9) Hurwitz, *supra* n. 2, p. 154.

에 예상수신국에 대하여 事前通告(prior notification)와 事前協議(prior consultation) 나아가 事前同意(prior consent)가 요구되는가, ③ DBS로 인한 損害(damage)에 관하여 實施國이 國際責任을 지는가, 동시에 이 책임은 越境電波(spill-over)에 대하여도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UN COPUOS 내에서 1970年 France는 DBS에 관한 一聯의 行動準則인 소위 ‘Code of Good Conduct’를 내놓았다.⁽¹⁰⁾ France의 제안에 이어 DBS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이 부각되었다. 하나는 국가주권을 내세우고 사전동의를 분명히 요구하는 France, Soviet와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이고, 둘째는 정보유통의 자유를 주장하며 事前同意와 內容規制와 같은 일체의 制限을 反對하는 美國의 자세이며, 세째는 중도적 입장에서 事前協議(prior consultation)과 兩者協定(bilateral agreement)을 통한 國제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Canada, Sweden 등의 견해이다.

1972년 Soviet는 소위 “The Soviet Draft Convention”을 제출하였고⁽¹¹⁾ 그 내용은 事前通告가 없는 spill-over는 不法한 行動이며, 受信國의 明示的 同意가 요구되고, 또한 수신국들은 自國領域外에서 任意로 不法行爲를 배제할 모든 方法을 使用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것이었다. 이후 1974年 美國은 國家의 放送實施權을 장려하는 協約草案을 제출하였고⁽¹²⁾ 1979년 Canada와 Sweden은 仲裁役답게 妥協的 內容의 協約草案을 또한 제출하였다.⁽¹³⁾

1982년 COPUOS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에 따라 DBS문제는 UN총회로 넘어가게 되어 UN總會決意 3792가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¹⁴⁾ 결의 3792는 모든 DBS활동에 대한 국가책임과(8항) 수신국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13항) 拘束力있는 협약(Convention)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世界人權宣言 19조에서 규정한 경

(10) Queeney, Kathryn M., *Direct Broadcast Satellites and the United Nations*, Sijhoff & Noordhoff, 1978, p.241 et seq.

(11) Queeney, *Ibid.*, p.227, et seq.

(12) *Id.*

(13) The Canadian-Swedish Proposal to the 4th Session of the Working Group on Direct Broadcast Satellites, *Ibid.*, p.245.

(14) 107찬성, 13반대 (일본포함), 13기권. U.N.G.A. Resolution 3792 on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Jasentuliyana, Nandasiri, *Manual on Space Law*, Oceana, 1979, v.2, p.105.

보유통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¹⁵⁾ 서독, 이탈리아 등은 나아가 國際法의 一般原則(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¹⁶⁾ 그러나 정보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無制限한 權利는 아니며 各國의 國內法에 의하여도 제한을 받고 있고 人權宣言 29條 역시 이러한 내용을 規定하고 있다.⁽¹⁷⁾ 국내법에서 정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한 것은 국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¹⁸⁾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19조를 근거로 한 반대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한편 국가의 國제책임(Stat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Responsibility)에 관하여서도 各國이 他國의 合法的 利益과 國際社會의 利益을 고려하여 權利를 行使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Trail Smelter Case, Corfu Channel Case 등을 통하여 확립되어가고 있다. 초국경오염, 원자력에너지 관리, 우주활동 분야와 같은 고도기술 분야에 있어서 事前協議 내지 同意要求가 소위 '利益衡量義務(duty of balancing interests)'의 一內容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연합사무국(UN Secretariat),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ECD 등의 검토결과를 통하여 명확화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논의는 초기에는 ITU 자체의 성격이 기술적 기구인 이유로 주파수대의 분배, 주파수 등록 등 국제통신의 합리적 이용

(15) UN총회결의 3792의 「국가책임」과 「국가간 협의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국가들은 자국에 의해 수행된 국제 적절위성방송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야 한다.
9. 만일 국제 적절위성방송 활동이 국부간조직에 의해 수행될 경우 8 항에서 언급한 책임은 그러한 조직 및 참여국가들에 의해 감수되어야 한다.
13. 국제 적절위성방송 활동을 실시하는 국가는 자체없이 수신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의도를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들이 요구한 경우 즉각적으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통신개발연구원, 『연구보고 88-04』, pp.73-74.

(16) Taishoff, supra n.2, p.154.

(17) Spiegel, Walter, "Prior Consent and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Regulation of Transnational Communications" *Michigan Yearbook of Intl. Legal Studies*, 1984, pp.379-89.

(18) Anawalt, Howard,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Quest for Communication Equality", *Michigan Yearbook of Intl. Legal Studies*, 1984, pp. 360-77.

(19) Taishoff, supra n.2, p.127, et seq.

에 관한 것이 있으나, 1971년 WARC회의 (국제무선주관청)에서 제안된 국제 전기통신협약부속서(Radio Regulation Section 428A)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spill-over’의 내용에 관한 논쟁⁽²⁰⁾으로 한때 뜨거운 토론장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하여 국가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UNESCO는 또한 국제정보교류의 전제로서 국가들의 고유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1972년 ‘위성방송사용에 관한 지도원칙선언(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s)’을 마련하였다.

특히 商業放送의 전송에 관하여는 送·受信國사이의 特別協定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²¹⁾

기본적으로 ITU는 기술적 기구인 점에서, UNESCO는 ‘미디어에 대한 국제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DBS를 다룬다는 점에서, 둘다 DBS 전담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NESCO가 ‘국제정보유통질서’의 맥락에서 DBS를 규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衛星直接放送에 있어서 ‘情報의 自由’

국가주권에 대한 정보자유의 우위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 비록 소수이나 — 주로 과거 국제 단파라디오방송의 前例와 관계국제협정 및 결의, 각국의 국내법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2차대전 이전에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는 ‘국가들은 전파가 無害하고(innocent) 단순하며(simple) 국제법에 합치하는 한 自由通過를 막을 權利가 없다’고 인정하였고⁽²²⁾ 결과적으로 특정한 放送에 관한 抗議도 별반없이 國境을 넘는 自由放送의 原則(principle of freedom of broadcasting)이 國際慣習法으로 確立되었고 1930년대 이후 TV방송 시작후 越境 TV방송

(20) 동일한 내용이 1979년 WARC에서도 반복되었고, 현재는 Radio Regulation Section 6222, 3에 수록되어 있다.

(21) Ploman, Edward W., *Intl. Law Govern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1982, p.284.

(22) Scott, J.B., “The Institute of Intl. Law”, *AJIL*, v.21, pp.716-728.

에 대하여도 동일한 原則이 적용되었다. ⁽²³⁾

이후 情報流通의 自由는 世界人權宣言 — 自體의 法的 拘束力은 없으나 國際慣習法原則을 포함하고 있다 — 19조⁽²⁴⁾를 포함하여 다수의 國제적 합의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²⁵⁾

한편 國제인권규약 19조(1966年,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는 他人의 權利尊重, 國家主權・公共秩序・道徳 등의 保護를 요구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제한이 1950년 유럽인권협약에도 두어지고 있다. 이것은 1969년의 미주인권협약⁽²⁶⁾ 역시 동일하다. ⁽²⁷⁾ 각국의 国내법 역시 정보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주권행사의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²⁸⁾ 따라서 정보의 자유는 絶對的 自由는 아니며 國益(national interest)에 근거한 個別政府의 規制에 從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단파방송은 또한 방송기술수준이 미흡하여 음성만으로 송수신되었던 시대의 것으로 발전된 기술의 위성 TV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는 힘든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라디오방송에 관한 규율이 그대로 DBS에 유추적용되어질 수는 없으며 강력한 media인 TV에 대하여는 보다 實質的인 規制의 필요성이 있고, 國제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전술한 논의들이 바로 DBS에 관한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23) Matte, N. Mateesco, *Aerospace Law: Telecommunications Satellites*, Butterworths, 1980, p.206.

(24) 세계인권선언 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25) 1950년 유럽인권협약,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3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협약, 國제인권규약, 1969년 미주인권협약 외 다수.

(26) 미주인권협약, 13조.

(27) 최근 EC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위성방송의 내용기준(program standards)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No.4 (84) 22)를 마련하였다. Hondius, supra n.3, pp.385-386.

(28) 캐나다는 방송법(Canadian Broadcasting Act) 3 (2)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고 독일헌법(Fundamental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5조, 1, 2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Cooper, B.M., "Broadcasting by Satellite in Canada: The Down-Link Dilemma",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10, 1985, pp.307-315.

‘정보유통의 자유’를 국제법이 유의하여야 할 國內法 事項이라 한다면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은 국내법이 존중하여야 할 國際法 事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가 자국영토로 유입되는 정보에 대하여 國家目的에 合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자유주장국’들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의 쟁점은 이러한 두 주장의 적절한 조화에 있는 것이며 무리한 일방적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外部情報 遮斷과 人權侵害에 대한 우려는 프로그램내용에 관한 결정의 基準과 決定機關을 客觀化・民間化하는 등의 다른 方法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하며⁽²⁹⁾ 통신・정보 규제에 관한 개별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는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V. 衛星直接放送의 內容規制(Control on Program Content)

먼저 정치적 선전에 관하여 본다. 정치적 선전에 관하여는 먼저 ① 과언이며 한 방송이 不法한 放送으로 취급되며, ② 「선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③ 이에 대한 對應方案의 合法性限界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³⁰⁾

‘선전’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³¹⁾ 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모든 형태의 대중통신을 이용하는 것, ② 선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반응을 야기시키기 위한 특별한 정보의 유포, ③ 특별한 사상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편파적으로 사상·의견 등을 표출하는 계획된 지적 활동, ④ 폭력, 불교, 보이콧(violence, corruption, boycott) 등의 方法 대신 중요한 상징을 사용하여 집단적 태도를 조작하는 것.

이와같이 ‘선전’의 개념의 내용으로 고의성·선동성·편파성·목적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어느 의미에서는 모든 방송은 고의적·목적적·선동적·편파적 성격의 一端을 구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29) 이러한 점에서도 DBS에 관한 다자적, 양자적 — 어느 수준에 있어서도 — 합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0) 1982년의 UN총회결의 3792 작성과정에서도 많은 논의 끝에 프로그램내용 규제의 부분은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31) Münch, Jean-Bernard, *Aspects juridiques de la radiodiffusion par satellite*, thesis, IUHEI, Frankfurt, Lang, 1975. Taishoff, supra n.2, pp.32-33에서 제인용.

보면 위의 개념 또한 適用可能性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DBS에 관한 그간의 논쟁 역시 결국 敵對的宣傳(hostile propaganda)의 개념을 명확히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금지되어야 할 개별항목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UN COPUOS의 DBS실무반(Working Group)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요 형태를 정치적, 사회문화적, 상업적 내용으로 구분하면서 정치적 측면으로는 因習이나 宗教에 있어서의 비관용적 태도의 선동, 기본적 인권침해, 국내문제 간섭, 사회적 불안정성 등이 거론되었고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은 'Code of Program Standard'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내용으로 폭력, 공포, 섹스, 국내문화와 종교 등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²⁾

소위 'The French Code of Good Conduct'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고 있다. ① 타국의 국내문제 · 외교정책수행에 대한 간섭, ② 국제평화 · 국내치안유지에 유해한 선전, ③ 개인의 존엄성 · 권리 침해, ④ 개인의 도덕적 · 종교적 · 철학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침해, ⑤ 폭력 · 공포의 장면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⑥ 아동들이 시청할 수 있는 成人프로그램에 대하여는 事前案内를 하여야 하며, ⑦ 수신지역의 문화 · 문명 · 종교 또는 전통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의 방영은 금지되어야 한다.⁽³³⁾

결론적으로 1967年 宇宙協約(Outer Space Treaty)⁽³⁴⁾ 前文이 宇宙의 平和的 利用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육상으로 전송되건 宇宙에 根據한 배개체에 의해 전송되건 공격전을 위한 선전, 인종차별, 적대행위, 민족적 · 인종적 · 종교적 충돌 촉발, 개인과 국가의 기본적 권리 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放送은 不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실효적 규제를 위하여 多者的,

(32) Christol, Carl Q., *The Modern Intl. Law of Outer Space*, 1982, p.612, et seq.

(33) UN총회, COPUOS, DBS 실무반 3차회의에 France에 의하여 제출된 초안, A/AC. 105/WG, 31CRP. 2, May 20, 1970, 1-2. Queeney, supra n.10, pp. 73-74에 정리.

(34) 우주활동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은 ①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67. U.N.T.S.V. 610, p.206. ② Moon Treaty(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979.12.5, (ILM., v.18, p.1434). ③ Liability Convention(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972.3.29, U.N.T.S.V. 961, p.187).

兩者的 — DBS송수신국간 — 水準에서 구체적 개념과 규제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 협의를 내용으로 한協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상업광고(advertisement)와 상업적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972년 UNESCO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교육의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한 위성방송 이용에 관한 지도원칙 선언”⁽³⁵⁾은 방송위성 사용은 국제적 협력에 근거하여야 하며⁽³⁶⁾ 특히 상업적 전진의 경우는 송수신국간의 특별합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유럽지역에서 방송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조직체인 유럽방송연합(The European Broadcasting Union)은⁽³⁸⁾ ‘DBS의 spill-over로 인한 인접국가들에 대한 영향은 상업방송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야기하고 있다’⁽³⁹⁾는 점을 인식하고 1983년 7月 15日, 15개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 「DBS를 이용한 상업적 TV광고에 관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Regarding Commercial TV Advertising Broadcast by DBS)」을 마련하였다.

同宣言 3條는 會員社들이 DBS 상업방송으로 인한 실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자적·다자적 차원의 전문적 협조와 합의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상업방송의 spill-over에 대하여는 DBS방송 수신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기울이도록 하고 (full regard for the domestic law of foreign countries) 의도적 상업방송의 경우, 수신국의 TV상업광고에 관한 국내법 준수는 기본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條).⁽⁴⁰⁾ 한편 11條는 잠재

(35)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for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s”, UNESCO. G.C. Res., 1972.

(36) Art. II.2, “The use of satellites for broadcasting should be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world-wide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and professional”.

(37) Ploman, Edward W., *supra* n.21, p.284, et seq.

(38) EBU는 방송사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32개국의 37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42개국, 63개사의 associate member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적 수준에 있어 방송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한 DBS 문제해결의 하나의 모범례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umphorst, Werner, “The Role of the European Broadcasting Union As Regards the Provision of Satellite TV Services in Europe,” Bate B. Stephen (ed.), *Television by Satellite: Legal Aspect* pp.13-23.

(39) European Broadcasting Union, “Direct Broadcast Satellites and Television Advertising,” *EBU Review*, Sep. 1983, p.1.

(40) Id.

의식을 이용한 광고(subliminal advertising)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기구의 활동은 행정기구를 자극하여 이어서 1984年 2月 23日 유럽委員會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은 위의 선언과 유사한 내용의 “Recommendation on Principle on Television Advertising”을 내놓게 되었다.⁽⁴¹⁾

최근 유럽지역에서 위성·유선방송 연결사업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Satellite Television PLC(일명 Sky Channel)의 예는 위성방송 사업에 있어서 TV광고에 관한 각국 법안의 갈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⁴²⁾ Sky Channel은 각국의 광고규제법이 상이한 가운데에서 협명하게 ① 政府當國의 同意를 필수적으로 얻고, ② CATV 업자들에게 반드시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③ 다시 CATV 업자들에게 반드시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의 기준에 따라 Sky Channel이 광고를 전송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를 통하여 방송을 실시하였다.

문화침해적 방송에 관하여도 정치적 선전에 있어서와 같이 외설, 모욕, 폭력, 문화침략 등의 개념 자체가 상대성을 가지는 이유로 규제의 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상대성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기 위하여는 양자적·다자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체 — 정부기관 또는 민간방송사간 —의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VII. 衛星直接放送에 관한 國家責任

과거의 전통적인 국제법상 국가책임론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主觀的 責任論’(過失責任論, liability for fault or subjective res-

(41) DBS 방송수신국의 광고·아동보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EC는 1989년 3월 14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Intl. Herald Tribune*, 1989년 3월 18-19일, 18면.

(42) 소위 Sky Channel Service는 위성을 통해 영국을 송신국으로 하고 오스트리아, 페란드, 불란서, 서독,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아크, 등 10개국의 위성방송 system에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Crosby, Scott, “Advertising on Satellite Television,” in Bate B. Stephen (ed.), *Television by Satellite*, 1987, pp.51-59.

ponsibility)은 故意, 過失의 主觀的 要件과 國際義務違反(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의 客觀的 要件을 구비하여야 國제책임이 발생한다는 이론적 입장이고 ‘客觀的 責任論’(因果的 責任論, causal liability or objective responsibility)은 主觀的 要件은 불필요하며 國가에 從屬可能한 行爲로부터 도출된 國제의무위반(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이 있으면 ‘客觀的 으로’ 國家책임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相當한 主意(due diligence)’의 해태는 國際義務不履行과 同一視된다. ⁽⁴³⁾

오늘날은 이러한 고전적 책임론과는 달리 國제책임의 발생에 있어 주관적 요건은 물론 行爲의 不法性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責任論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최근의 과학적 발전이 빚어낸 새로운 현상들에 國제법이 적응하기 위한 努力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國제책임론은 國가들의 자유로운 주권행사와 함께 인류를 멸종시킬지도 모르는 산업기술력의 무규율한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國가의 활동이 不法한가 合法한가(wrongfulness)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비록 인류에게 필수적이거나 이로움을 준다 하여도 얼마만큼의 위험 내지 손해(damage)를 유발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소위 ‘相當한 注意(due diligence)’를 기울였다 하여도 免責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責任論의 中心은 이제 ‘國際義務違反(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으로부터 ‘人類의 共通利益과 人類의 相互依存性’으로 옮겨진 것이다. 동시에 ‘不法性’은 ‘因果性(principle of causality)’으로 대체되어 絶對責任論(absolute liability)은 有害한 結果가 國家の 行爲로부터 由來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國제책임의 발생을 인정하는 것이다. ⁽⁴⁴⁾

이러한 엄격책임의 한 형태로서 ‘우주법(space law)’은 우주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一種의 絶對責任原則 — 정확한 개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 을 적용하고 있다. ⁽⁴⁵⁾

宇宙協約(Outer Space Treaty) 중 DBS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은 다음

(43) Bedjaoui, Mohammed, ‘Responsibility of States: Fault and Strict Liability’ *Encyclopedia of Public Intl. Law*, v.10, p.358 et seq.

(44) 침해(harm)와 관계국가의 위험한 행동(activity) 사이에 인과관계(causal link)만 성립하면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absolute)’이며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Ibid.*, p.361.

(45) Supra n.34 참조.

과 같다.

① 협약 2조 : 우주는 주권주장·사용·점유,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도 국가의 專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협약 6조 : 국가는 정부기관, 비정부주체에 의하여 행해진 우주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③ 협약 7조, 협약 9조 : 우주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 국가는 協力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모든 다른 가입국의 상응하는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와 함께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만약 국가가 국가 자신이나 국민에 의하여 계획된 우주에서의 활동이 다른 가입국에게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과 개발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유해한 침해(potentially harmful interference)를 야기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活動開始前에 적절한 國際的 協議(appropriate international consultation)를 하여야만 한다. 타국에 의하여 계획된 우주활동이 이러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어지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는 국가는 그러한 活動 또는 실험 전에 協議(consultation)를 요구할 수 있다 — (各條文 要約발췌).

이와 같이 협약 6조는 문제의 행위가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행위일지라도, 또한 비정부주체에 의하여 행하여졌을지라도, 모든 國民의 活動에 대한 國家責任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9조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은 他國의 利益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協議(consultation)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責任協約(1972, Liability Convention)은 우주협약의 목적에 근거하여 우주에서의 公·私의 活動에 관한 國家の 특수한 責任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責任의 性質에 관하여 Canada는 1978年 'Cosmos 954' 위성 추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절대책임 원칙은 고도위험 분야에 있어서 적용된다. 이 원칙은 많은 국제협정에 반복되어 규정되고 있으며 文明國家에 위하여 인정된 국제법의 一般原則이 되었다"고⁽⁴⁷⁾ 주장하였다.

(46) 책임협약(1972 Liability Convention)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가 특정한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Nottebohm Case, Barcelona Traction Case에서의 국제판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ICJ: Report 1955, p. 4, 1970, p. 43.

(47) "Claims against the USSR for damage caused by Soviet Cosmos 954," Canadian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ILM, v. 18, 1979, p. 899.

그러나 우주협약과 책임협약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절대책임의 法理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국제책임의 구체적 적용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우주조약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우주활동을 허가·감독하여야 하며 우주활동이 他國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확보할相當한 注意義務(due diligence)가 있으므로 同義務의 履行으로 침해 — 물질적, 정신적 — 가 예상되면 예상피해국과 먼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賠償 내지 補償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두 協約은 순수한 絶對責任이라기 보다는 ILC에 의하여 보고되고 있는 국제책임 원칙의 재평가 내지 재해석의 흐름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ILC(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Ago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국제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책임법 원칙’의 법전화를 시도하였고 다시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책임 체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⁴⁸⁾

이러한 작업은 1980년 이후 Robert Quentin-Baxter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의 법전화(codification)를 위한 일련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Baxter와 ILC는 국가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함에 있어 諸國의 이익을 균형시켜야 할 利益均衡義務(duty of balancing interests)를 부담하며 — 국가의 자국영토 내에서의 行爲의 自由와 他國에 대한義務 사이의 均衡 — 구체적인 內容은 고려와 협의 의무(the duty of care and consultation), 위험의 사전통고(prior notification of danger), 피해최소화 의무 등이며 이러한 것이 國際慣習法上(international customary law)義務로 이미 확립되었다고 기술하였다.⁽⁴⁹⁾

따라서 事後的인 被害補償義務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의 不履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이익균형의무(duty of balancing interest) 위반

(48) ILC Yearbook, 1978. 2, paras 37-39.

(49) ILC, A/CN. 4/334/ add.1, p.3.

으로부터 事後的인 救濟義務가 발생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책임론의軌를 따르고 있다.

한편 국제연합사무국(UN Secretariat)도 이 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⁵⁰⁾

UN사무국 보고서는 “영토관할권 내지 통제를 넘어 侵害를 야기하는 국가의 행위는 다양하다. 그러한 행위는 우주공간의 이용, 원자력에너지 관리, 산업활동,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보존과 이용, 통신과 방송까지를 포함한다. 이 중 어떠한 행위들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욱 중대한 침해(injuries)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는 경우에 따라 재난과도 같은 것이다”고 지적하고⁽⁵¹⁾ 소위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國際的 義務’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사전협상과 협의(prior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이익균형(balancing of interests)의 제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바로 피해보상 등을 포함하는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⁵²⁾

유례 한 영향에 대한 평가란 다른 국가들과 국가구성원들에 대한 침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수행에 앞서 개시되고 수행기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연속적인 절차적 결정을 의미한다.⁽⁵³⁾ 이러한 영향평가의 다양한 국면에는 ‘자료수집(data collection)’, ‘사전협상과 협의(prior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이익 균형’의 내용이 포함되며 다수의 현행 국제조약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⁵⁴⁾ 계속하여 同報告書에 의하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1단계로 자료수집 즉, 문제의 활동이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미칠 침해(injuries)의 종류와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수집 활동의 기본은 ‘신의성실에 입각한 他國의 利益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수집이 끝나면 2단계로 ‘사전협의와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협의·협상의 내용은 손해의 — 물질적·비물질적 ·

(50) U.N. Secretariat, *Survey of State Practice Relevant to Int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l. Law*, ST/LEG/15, 1984년 2월 23일.

(51) Ibid., p.14.

(52) Taishoff, supra n.2, p.73.

(53) U.N. Secretariat, ST/LEG/15, p.126.

(54) Id.

잠재적 — 본질, 손해결정권자 등의 문제들과 같이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협의는 雙方의 대립되는 이익의 해결에 대하여 當事國이 同意를 이루 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동시에 평가의 대상이 되며 사전협상이 요구되는 침해(injuries or harm)의 의미에 대하여 同報告書는 物質的(material), 非物質的(non-material), 潛在的(potential) 侵害로 구분하고 이 중 비물질적 침해는 국내질서와 영토고권에 위배되는 방송으로 인한 국가의 존엄성 침해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⁵⁶⁾

VII. 結語

현재의 국제법상 국제책임의 촛점은 이제 문제된 행위의 不法性 여부가 아니라 行爲의 結果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⁷⁾ 국제책임원리에 관한主流的 해석에 의하면 — ILC, UN事務局 — 국가는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利益均衡義務(duty of balancing interests)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事前協議・事前告知 등을 실시할 국제관습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相當한 注意(due diligence)를 缺한 것으로 인정되어 賠償責任을 면할 수가 없다. 즉, 손해가 단순히 발생하여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事前的 評價(impact assessment) — 이익균형의무 이행 포함 — 를 통하여豫防的 措處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책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고도기술 분야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 국제관습법적 의무에 근거하건 宇宙協約의 明文에 의거하건 간에 — 日本은 DBS실시에 앞서서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예상수신국과 Spill-over로 인한 피해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일본과 한국 등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事前協議 등의 信義誠實(good-faith)의 原則에 입각한 협력을 하였어야만 했다고 할 수 있다.

(55) Ibid., p.54.

(56) Ibid., p.67.

(57) Taishoff, supra n.2, p.92.

정부간에 일종의 包括協定(package agreement)을 체결하고 방송사, 양국의 방송심의 관련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임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탄력적인 해결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상업광고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설정과 함께 타당한 구체적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굳이 ‘共存의 法,’ ‘協力의 法’으로서의 국제법의 성격변화를 거론하지 아니하여도 우주통신·방송을 포함한 고도기술 분야야말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책임과 관련하여 논쟁을 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익한 갈등을 회피하며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법적 체제(legal regime)는 결코 제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과정 중에 있는 국제통신법의 올바른 발전을 지향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기술고도화는 善意에 바탕을 둔 국제적 협력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人類의 滅切을 결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宋相琨

1987 “情報社會와 法的 裝置”, 『通信政策動向』, 6號, 겨울.

張孝相

1985.12. “衛星直接放送에 대한 中長期對策과 그 法的 側面”, 『國際法學會論叢』, 제30권 제 2 호.

통신개발연구원

1988.12. 『연구보고 88-04, 위성을 통한 통신과 방송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
彭元順

1989 『言論法制新論』, 나남新書 17, 第4章：放送衛星의 自由와 規制.

유네스코

1981 『세계는 진정 새로운 정보질서를 원하는가』, 구미무역.

하이테크정보사

1988 『정보산업법령집』.

(2) 외국문헌

- Addis, Adeno
 1988 "International Propaganda and Developing Countrie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21, N.3.
- Bate, Stephen de B. (ed.)
 1987 *Television by Satellite: Legal Aspects*, ESC Publishing, Limited.
- Bin Cheng, Michael, Milde, N.M. Matte
 198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11, Law of the Sea, Air and Space, North-Holland.
- Christol, Carl Q.
 1984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 Fawcett, J.E.S.
Outer Space: New Challenges to Law & Policy, Clarendon Press, Oxford.
- Fitzmaurice, William
 1983 "The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Is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he Answ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15.
- Hondius, Fritz W.
 1985 "European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s for Television and Sound Radio", *Annals of Air & Space Law*, V.X.
- Hurwitz, B.A.
 1988 "The Labyrinth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Law: Direct Broadcast Satellite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1, XXXV.
- Jasentuliyana, N. & Lee, Roy S.K.
 1979 *Manual on Space Law*, Vol. I. II., Oceana Pub.
- Lachs, Manfred
 1972 *The Law of Outer Space: An Experience in Contemporary Law Making*, Sijthoff, Leiden.
- Matte, Nicholas Mateesco
 1982 *Aerospace Law: Telecommunications Satellites*, Butterworth.
- Michig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 1984 *Regulation of Transnational Communications*, Clark Boardman Company.
- Pichler, Marie Helen
 1987 *Copyright Problems of Satellite and Cable Television in Europe*, Martinus Nijhoff.
- Ploman, Edward W.
 1982 *International Law Govern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Greenwood Press.

Queeney, Kathryn M.

1978 *Direct Broadcast Satellites and the United Nations*, Sijthoff & Noordhoff.
Quentin-Baxter, Robert Q.

Reports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pecial Rapporteur:

A/CN. 4/334, 1980

A/CN. 4/334/Add. 1, 1980

A/CN. 4/334/Add. 2, 1980

A/CN. 4/346, 1981

Taishoff, Marita Natasha

1987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Direct Broadcast Satellite*, Frances Pinter Pub.
Raman, K. Ventaka

1983 "Towards a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Problems of Access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Structure &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White, Rita Lauria

1988 *The Law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unication*, Artech House.

UNESCO Documents/Publications

1971 *Broadcasting from Space*, Paris.

1972 *A Guide to Satellite Communication*.

UN Secretariat

1984 *Survey of State Practice Relevant to 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T/LEG/15, 3 Feb.